

대법원 2018. 11. 9 선고 2018다37499(본소), 2018다37505(반소) 판결

[임금등 · 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11. 9 선고 2018다37499(본소), 2018다37505(반소)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18. 5. 29 선고 2017나13011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상고인 A

피고(반소원고), 상고인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18. 11. 9.

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. 5. 29. 선고 2017나13011(본소), 2017나14113(반소)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이기택

대법관권순일

대법관박정화

주심대법관김선수